



비정규직 및 전직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



“훈련기간 중 최대 1천만원(연 1%)까지 장기 저리로 생계비를 대부해 드립니다”

신청자격

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며, 훈련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이상

비정규직근로자	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을 취득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(기간제, 단시간, 파견, 일용 근로자) ※ 연간소득 3,000만원 초과자 제외
전직실업자	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을 상실한 자 ※ 연간소득(부부합산) 4,000만원 초과자 및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제외

- ※ 신규실업자(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자)는 대부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※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제외
- ※ 단,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근로자 및 최종 이직 당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서 근무하였던 전직실업자의 경우에는 2017.3.31.까지 한시적으로 단서의 연간 소득금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

대부한도 및 상환조건

대부한도액	1인당 1천만원 이내 ※ 대부금액은 1인당 대부 한도내에서 잔여 훈련기간에 따라 결정
대부금지급	훈련수강 기간동안 월별 1백만원 한도 분할대부 ※ 분할대부기간동안 취업, 훈련중도포기, 실업급여 수급, 이자 미납등의 사유 발생시 분할대부 실행 중지
대부금리	연 1.0% ※ 신용보증료 연 1.0%별도 부담, 선공제
상환기간	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신청자 선택

- ※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(거치기간 단축 시스템)
- ※ 거치기간, 상환기간 선택후에는 변경 불가
- ※ 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(법정공휴일, 토요일 및 근로자의날 포함)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로 연기

대상훈련

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 제3조 제2항에 따른 아래의
3주(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32시간) 이상의 훈련에 대하여 대부

- ※ 개별 훈련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 합산 훈련기간이 3주(인터넷 원격 훈련의 경우 32시간)이상인 경우 포함
- ※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, 2주이상(4주미만)의 훈련을 포함(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자격 부여)

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 및 「고용보험법」 지원 훈련과정

- 실업자계좌제(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 포함)
- 근로자계좌제, 사업주훈련, 일학습병행제 훈련
-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훈련
- 청년취업아카데미훈련, 지역실업자 훈련
- 고용디딤돌 훈련, 지역산업맞춤형 훈련
- 폴리텍 기능사 과정 훈련

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
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훈련

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

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

- ※ 세부 훈련과정 확인가능 인터넷 주소
 -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지원 훈련과정
 - 직업능력지식포털 (www.hrd.go.kr)에서 확인 가능
 - 일부 과정(고용디딤돌, 지역산업맞춤형 등) 조회되지 않을수 있음
 -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원 훈련과정
 - 건설근로자공제회직업훈련정보망 (www.jobgohrd.or.kr)에서 확인 가능

신청 및 안내

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❖ 신청 :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및 근로복지서비스 (http://welfare.kcomwel.or.kr) ※ 근로복지서비스 신청시 (공인인증서 필요) ❖ 사업안내 : 근로복지넷(www.workdream.net) ※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 (팩스접수는 불가능)
절차	신청서 접수 → 구비서류 제출 → 대부대상자 결정 → 보증서 발행 → 1회차 대출실행(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) → 2회차 이후 매월 15일 자동실행 (훈련실시여부, 자격변동여부 확인 후 결정)
대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소기업은행(www.ibk.co.kr) → 개인뱅킹 → 대출메뉴 → IBK근로자생활안정대출 → 조회(보증서내역) → 대출신청(약정동의) • 스마트폰(i-one뱅크) 다운로드설치 후 실행

- ※ 대부실행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은행 통장과 인터넷뱅킹 가입 필수
- : 기업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 신용보증 처리후 은행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
- ※ 분할지급기간 중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대부 중단

구비서류

공통	직업훈련생계비 대부신청서 및 서약서
비정규직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근로계약서 •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•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(국세청)
전직실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족관계증명서 •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(국세청) ※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포함



고객지원센터
1588-0075



자세한 안내 및 온라인 신청
근로복지서비스(<http://welfare.kcomwel.or.kr>)



고용노동부



근로복지공단
Korea Workers' Compensation & Welfare Service



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,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.
※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: 우리공단홈페이지(www.kcomwel.or.kr) 고객소통마당 내 Help-Line(헬프라인) 또는 사이버 감사실